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창 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창원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시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와 성능개선 총담금 적립 주체에 민간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20.4.7.)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민간 사업자가 법적 관리주체가 되어

앞으로 시의 기반시설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협력, 기반시설 유지관리, 성능평가 실시 등에 대한 의무부여와 관리 주체로 하여금 성능개선 총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관리 주체에게는 성능개선 적립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성능개선 총당금 적립에 대한 재량과 의무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